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이진국*

국 | 문 | 요 | 약

독일은 국제형법전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 인권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형법전 발효 이후의 국제형법전 적용실태를 보면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형법전 제1조의 순수한 세계주의의 규정이 한편으로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53f조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더하여 실무에서도 제153f조의 예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5항에서 조건부 세계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집단살해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은 이미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서 '대한민국영역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핵심적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공동대응이라는 관습법적 의무를 오히려 이행하지 않는 입법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을 순수한 세계주의로 개정하는 대신 절차법적 차원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절차법적으로 소추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함의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주제어 : 국제형법, 국제범죄, 독일 국제형법전, 세계주의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I. 논의의 계기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하 ‘로마규정’으로 약함)은 국제인권법과 국제형법의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로마규정을 통하여 ①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¹⁾ 등 국제법적 범죄구성요건들이 최초로 하나의 국제법 문서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었고(로마규정 제5조 내지 제8조), ② 이와 같은 핵심적 국제범죄에 대하여 ‘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③ 반인도적 범죄가 독자적인 범죄그룹으로서 상세하게 규정되었고(로마규정 제7조), ④ 로마규정 제3장을 통하여 국제형법의 총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로마규정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근거지우는 실질적 의미의 국제형법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²⁾

그런데 실체형법의 영역에서 로마규정 그 자체는 제네바협약과 그 제1차 부속의정서와는 달리 조약당사국에 대하여 국내법 질서에서 핵심적 국제범죄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체형법의 영역에서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이행 법률을 제정할 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은 국내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조약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내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지 않은 국가들이 로마규정의 국내이행 법률을 제정해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적 국제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해 12월 21일자 법률 제8719호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에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관련 정보도

1) 현재 로마규정은 침략범죄의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정의해두지 않고 있다. 다만, 로마규정 제5조 제2항은 차후에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로 하여금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2) 국제형법의 개념이해와 발전과정 및 법원(法源)에 관해서는 이진국, 국제형법의 법원(Rechtsquelle)과 해석방법론에 관한 소고, 입법정책 제1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12, 59-86쪽 참조.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5항에서 실체법적 차원에서 조건부 세계주의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주의 규정이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실무에서 어느 정도로 실효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범죄의 행위자들이 주로 고위정치인이나 군고위급 장성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³⁾ 수사기관이 정치적·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외국의 고위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증거확보 등과 관련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2002년 6월 29일에 제정되어 로마규정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2002년 6월 30일자로 시행된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독일은 국제형법전 제정 이후 국제형법전 위반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발이 있었지만, 독일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독일 국제형법전의 체계와 실무에서의 그 운용을 살펴봄으로써 독일과 같이 독립적인 특별형법의 형식으로 로마규정의 이행법률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핵심적 국제범죄를 실효적으로 소추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구할 필요가 있다.

II. 독일 국제형법전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독일 국제형법전에 명시된 금지규범은 대부분 독일 형법을 통해서도 포섭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로마규정 수용 이전만 하더라도 독자적인 국제형법전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 형사사법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로마규정이 탄생한 이후에는 현행 형법이 핵심적 국제범죄의 전형적 불법내용을 불충분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독자적인 특별형법으로 국제형법전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예컨대 독일에서는 2005년에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Donald Rumsfeld에 대하여 국제형법전 위반의 책임을 물어 독일 연방경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ai Ambos, *Völkerrechtliche Kernverbrechen, Weltrechtsprinzip und §153f StPO – zugeich Anmerkung zu GBA, JZ 2005, 311 und OLG Stuttgart, NSTz 2006, 117, NSTz 2006, 436쪽* 이하 참조.

1. 국제형법전 제정의 배경

독일에서는 로마규정을 수용하기 이전에도 국제형법적 특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1949년 8월 12일자 국제인도법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⁴⁾은 협약체결국에 대하여 이른바 ‘중대한 침해’(grave breaches)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1953년에 제네바 협약의 실행을 위한 필요한 형법규정을 신설하되, 형법전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⁵⁾ 그러나 이는 성사되지 못했고, 그 이후 독일이 1954년에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⁶⁾에 가입하면서 형법에 신설한 형법 제220a조(집단살해죄)만이 유일한 국제법적 규범으로 남아있었다.⁷⁾

그런데 형법 제220a조는 그 제정 이후에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1992년에 발발한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는 세르비아계의 집단살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와 행위자들이 독일 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검찰이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집단살해를 행한 행위자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실효적인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었다.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검찰은 127건(총 177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총 5건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⁸⁾ 기소된 5건의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은 유고내전에서 중간지휘관으로 활동했던 세르비아인 Dusko Tadic에 대한

4) 여기서 4개의 제네바협약이란, 전장에서 군대 부상자 및 환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1차 제네바 협약(1949.8.12), 바다에서 군대의 부상자와 난파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2차 제네바 협약(1949.8.12),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3차 제네바 협약(1949.8.12),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차 제네바 협약(1949.8.12)을 말한다.

5) BT-Drs. 2/152, S. VIII.

6) Konvention über die Verhütung und Bestrafung des Völkermordes vom 9. Dezember 1948; BGBl. II 1954 S. 729 ff. 이 협약은 독일에서 1995년 2월 22일자로 발효되었다.

7) 형법 제220a조는 국제형법전의 제정으로 인하여 형법에서 삭제되는 대신 그 내용이 국제형법전에 삽입되었다.

8) 독일 연방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총 127건의 사건 중 117건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로 처리되었고, 1건(2명의 피의자)은 구유고국제임시형사재판소에 인도되었으며, 4건은 다른 국가의 형사사법 기관 또는 구유고국제임시형사재판소가 소추한다는 점을 이유로 절차가 중단되었다. Rolf Hannich, Justice in the Name of All. Die praktische Anwend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s aus der Sicht des Generalbundesanwalts beim Bundesgerichtshof, ZIS 13/2007, 511쪽.

것이었는데, Tadi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요한 것은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에 대한 집단살해를 범했다는 점이었다.⁹⁾ 그러나 Bayern 주최고법원이 Tadic에 대한 심리를 개시할 무렵 구유고국제임시형사재판소 제1재판부는 Tadic을 인도해줄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Tadic은 1995년 4월 1일자로 구유고국제임시형사재판소로 인도¹⁰⁾되어 1999년 11월 11일에 반인도적 범죄를 이유로 20년의 자유형을 선고 받았고, 그 형은 국제형집행공조의 방식으로 독일에서 집행되었다. 기소된 사건 중 나머지 4건은 Düsseldorf 주최고법원과 Bayern 주최고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자유형이 선고되었고, 1명의 피고인은 집단살해에 대한 방조로 9년의 자유형을, 나머지 1명의 피고인은 모살죄에 대한 방조로 5년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구유고 내전과 관련한 독일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은 독일 내에서 국제형법의 이념에 대한 변화된 의식이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의식이 사법적 행위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공유에 기여하게 되었다.¹¹⁾

한편, 독일이 비준한 로마규정 그 자체는 실체형법의 영역에서 조약당사국에게 국내법 질서에서 핵심적 국제범죄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실체형법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로마규정의 조약당사국이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의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조약당사국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범죄를 실효적으로 소추할 수 없으며, 조약당사국이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함이 없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를 일반적으로 우선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로마규정의 조약당사국인 독일에서 로마규정의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독일 입법자는 특별형법의 형식으로

9) Tadic 사건에 대한 구유고국제임시형사재판소의 판례에 관해서는 Kai Ambos, *Der Allgemeiner Teil des Völkerstrafrechts, Ansätze einer Dogmatisierung*, 2. Aufl., Duncker&Humboldt-Berlin, 2004, 272-284쪽 참조.

10) 그 당시 이미 독일에서는 구유고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고 있었다.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mit dem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 für das ehemalige Jugoslawien(Jugoslawien-Strafgerichtshof-Gesetz) v. 10. April 1995; BGBl. I S. 485.

11) Rolf Hannich, *Justice in the Name of All. Die praktische Anwend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s aus der Sicht des Generalbundesanwalts beim Bundesgerichtshof*, ZIS 13/2007, 511쪽.

국제형법전을 제정하게 되었다. 독일 입법자가 특별형법의 형식으로 국제형법을 제정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① 죄형법정주의의 하위 원칙인 명확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내이행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했고, ② 국제충돌법의 영역에서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으며, ③ 독일 형법이 국제범죄의 특수한 불법내용을 모두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로마규정의 국내이행 법률의 제정

독일 입법자는 로마규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독일 연방의회는 로마규정을 비준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17일에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관한 법률(로마규정법률)’¹²⁾을 제정하였고, 또한 같은 날에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실행을 위한 법률(로마규정 실행법률)’¹³⁾을 제정하여 독일 사법기관과 국제형사재판소간의 사법공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2000년 11월 29일자로 기본법 제16조 제2항을 개정하여 독일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로마규정을 독일 국내에서 이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바로 특별형법의 형식으로 제정된 국제형법전이다. 국제형법전은 2002년 6월 29일자로 연방의회에서 공포되고 그 다음날인 6월 30일에 발효된 국제형법전의 도입을 위한 법률¹⁴⁾의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형법전은 독일의 실체형법을 로마규정에 조응시키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의 발전을 반영한 독자적 형식의

12) Gesetz zum Römischen Statut des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s vom 17. Juli 1998 (IStGH-Statutgesetz). BGBl. II 2000, S. 1393; BT-Drs. 14/2682, S. 6.

13) Gesetz zur Ausführung des Römischen Statuts des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es v. 17. Juli 1998; BGBl. I 2002, S. 2144.

14) Gesetz zur Einführ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es(VStGB-Einführungsgesetz) v. 29. Juni 2002. BGBl. I 2002, S. 2254.; 국제형법전 도입법률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제1조는 국제형법전의 신설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국제형법전 제정에 따른 형법의 개정, 제3조는 국제범죄에 대한 소추면제(기소유예)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53f조의 신설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4조는 법원조직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제5조는 법원조직법 도입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1977. 9. 30)의 개정, 제6조는 구 동독 국가보안부인 슈타지문서법의 개정, 제7조는 구 동독형법 중 발효 중인 규정의 무효화조치, 제8조는 발효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법전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⁵⁾

독일 입법자는 로마규정을 국내에서 이행함에 있어 수정된 이행방식을 취하였다¹⁶⁾. 그 이유는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마규정을 국내로 이행함에 있어 로마규정의 비이행이나 아무런 유보 없는 완전한 이행이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로마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교정책적으로 절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독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점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로마규정을 독일 국내로 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엄격한 명확성요구에 맞출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결과 독일 입법자는 국제형법을 단행법전으로 제정하기로 결정하여 독자적인 국제형법전을 탄생시켰다.

3. 국제형법전의 총칙

독일 국제형법전 제1부에 명시되어 있는 형법총칙의 규정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형법전 제1조는 모든 국제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외국에서 범해졌고 국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독일 국제형법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형법전 제1조는 순수한 세계주의(reines Weltrechtsprinzip)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범죄의 행위자가 독일인이 아닌 경우이거나 행위자가 독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당해 행위나 행위자가 국내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독일

15) Gesetzesentwurf der Bundesregierung - Völkerstrafgesetzbuch, BR-Drs. 29/02.

16) 로마규정을 국내에 법질서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크게 비이행의 방식과 완전이행의 방식이 있다. 비이행(Nulllösung)이란 국제법상 범죄구성요건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이 경우에는 로마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태양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국내 형법에 맡겨지게 된다. 이에 반해 완전이행이란 로마규정상의 실체형법과 국내형법간의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Gerhard Werle, Konturen eines deutschen Völkerstrafrechts, JZ, 2001, 887쪽 참조. 완전 이행의 방식에는 개별적으로 직접적용, 준용, 전제, 수정된 이행, 혼합형식 등의 세부유형이 있다. 로마규정의 다양한 이행방식에 관해서는 Regine Hartstein, Das deutsche Völkerstrafgesetzbuch, in: Hans-Heiner Kühne u.a., (Hrsg.), Völkerstrafgesetzbuch, Julius Jonscher Verlag-Osnabrück, 2007, 127-128쪽 참조.

국제형법전을 적용할 수 있다.

국제형법전 제2조는 국제형법전상의 개별범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 형법의 총칙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형법전 제3조(지시 또는 명령에 의한 행위)에 의하면, 군대의 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형법전상의 국제범죄(제8조 내지 제14조)를 범한 자가 그 명령 또는 지시가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로마 규정 제33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독일 형법 제17조의 금지착오 규정과는 달리 행위자가 명령이나 지시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으로 이해된다.¹⁷⁾

국제형법전 제4조는 상급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로마규정 제28조에 상응하는 규정이다. 상급자책임(superior responsibility)¹⁸⁾이란 군지휘관 또는 민간인 상급자가 하급자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담하는 형사책임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국제형법전 제4조의 상급자책임은 하급자의 범행을 통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일종의 감독책임으로 이해된다.¹⁹⁾ 국제형법전 제4조는 군지휘관 및 기타 민간인 상급자의 형사책임을 근거를 명시하면서도 독일 형법상의 부작위범에 적용되는 형감경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로마규정은 과실에 의한 상급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국제형법전 제4조는 고의에 의한 상급자의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²⁰⁾ 제5국제형법전 제5조는 국제범죄로서 중죄(Verschuldung)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시키고 있다.

17) BT-Drs. 14/8524, S. 18.

18) 종래 국제법질서에서 상급자책임은 군대와의 관련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책임(command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로마규정은 군지휘관 뿐만 아니라 민간인 상급자까지도 행위주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책임보다는 상급자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이 더 적절하다. Kai Ambos, Internationales Strafrecht, C.H.Beck/München, 2006, §7 Rn. 57.; Gerhard Werle, Völkerstrafrecht, Mohr Siebeck/Tübingen, 2003, Rn. 464.

19) Thomas Weigend, Bemerkungen zur Vorgesetztenverantwortlichkeit im Völkerstrafrecht, ZStW 116(2004), 999쪽.

20) 독일 입법자는 상급자가 자신의 감독의무를 과실로 해태한 사례를 형법 제13조의 부작위범이나 제14조의 타인을 위한 행위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BT-Drs. 14/8524, S. 19.

4. 국제형법전상의 개별적 국제범죄

국제형법전 제2부에는 제1절에서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 범죄(제6조, 제7조), 제2절에서 전쟁범죄(제8조 내지 제12조), 제3절에서 기타 범죄(제13조, 제14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관련법률이 모두 로마규정을 이행하는 법률이고, 따라서 로마규정의 지침을 많은 부분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조문내용의 나열은 피하고 그 체계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국제형법전 제6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은 독일의 구 형법 제220a조(집단살해죄)와 내용상 동일한 것이다. 구성요건의 내용은 1948년의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개념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로마규정 제6조(집단살해)에 상응하는 것이다.

국제형법전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반인도적 범죄는 집단살해죄와의 내용적 관련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절(제2부 제1절)에 편제되어 있다. 국제형법전은 제7조를 통하여 현행 국제관습법을 성문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¹⁾

국제형법전 제2부 제2절 제8조 내지 제12조는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범해진 국제법 위반 범죄, 즉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제8조에서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9조에서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제10조에서 인도적 활동과 식별표장에 대한 전쟁범죄, 제11조에서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2조에서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개별 조항들은 각각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4조와 유사하다. 국제형법전 제8조 내지 제12조는 국제적 충돌 뿐만 아니라 비국제적 충돌의 사례까지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에 대한 전쟁범죄도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제형법전 제8조 내지 제12조는 로마규정상 의 핵심적인 전쟁범죄 규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네바협약 제1 부속의정서의 국내이행과 같이 독일연방공화국이 국제법적으로 그

21) BT-Drs. 14/8524, S. 20; Gerhard Werle, Konturen eines deutschen Völkerstrafrechts, JZ, 2001, 892쪽.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구성요건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8조는 국제적 무력충돌시의 전쟁범죄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시의 전쟁범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 국제형법전은 국제형법상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동일하게 취급해온 그 동안의 발전을 고려하여 동법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력충돌의 개념은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인도적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국내정세의 불안, 긴장 또는 개별적 폭력범죄 등은 무력충돌이 아니다.²²⁾

국제형법전 제2부 제3절은 ‘기타 범죄’로서 감독의무위반죄(제13조)와 불고지죄(제14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법전 제13조는 같은 법 제4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조문은 모두 상급자의 책임을 근거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형법전 제4조는 하급자가 국제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례에서 군지휘관 또는 민간인 상급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3조는 독립적인 감독의무위반죄를 규정하여 상급자가 ‘과실’로 하급자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데 따른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고 있다. 또한 국제형법전 제14조는 하급자가 범한 범죄를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데 따른 군지휘관 또는 민간인상급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I.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

독일은 국제형법전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 인권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²³⁾ 그러나 국제형법전 발효 이후의 국제형법전 적용실태를 보면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형법전 제1조의 순수한 세계주의 규정이 한편으로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53f조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더하여 실무에서도 제153f조의 예외를 우선

22) Gerhard Werle, Konturen eines deutschen Völkertstrafrechts, JZ, 2001, 894쪽.

23) Hermann-Josef Blanke/Claus Molitor, Der internationale Strafgerichtshof, AV 2001, 168쪽; Claus Kreß, Vom Nutzen eines deutschen Völkerstrafgesetzbuches, Nomos-Baden-Baden, 2000, 21쪽.

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형사소송법 제153f조를 통한 순수한 세계주의의 제한

독일 국제형법전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국제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외국에서 범해졌고 국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순수한 세계주의 또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라 한다.²⁴⁾ 여기서 순수한 세계주의란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독일인이 아니고 행위지도 독일의 영토가 경우에도 국제형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범죄에 대하여 독일 국제형법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독일 국제형법전은 제1조의 순수한 세계주의는 언제 독일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답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독일 법원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형법전 도입법률을 제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53f조가 해결해준다. 형사소송법 제153f조는 국제형법전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검찰의 수사강제와 소추면제를 단계적으로 인정하여 순수한 세계주의를 소송법적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²⁵⁾ 형사소송법 제153f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에서 범해진 국제범죄가 독일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행위자가 독일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그 체류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범한 국제범죄의 행위자가 독일인인 경우에는 독일 검찰은 그 사건을 소추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53f조 제1항 1문 및 2문).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피의사실이 국제 재판소나 행위자의 국적국, 범행지국가 또는 피해자의 국적국에서 소추되는 경우에는 독일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한 소추를 면제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범해진 국제범죄가 독일과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건, 즉 행위자나 피해자가 독일인이 아닌 사건의 경우(제153f조 제2항 1문 제1호 및

24) Kai Ambos, Völkerrechtliche Kernverbrechen, Weltrechtsprinzip und §153f StPO – zugeich Anmerkung zu GBA, JZ 2005, 311 und OLG Stuttgart, NStZ 2006, 117, NStZ 2006, 434쪽.

25) Wolfgang Joecks, Strafprozessordnung, C.H.Beck-München, 2006, §153f, Rn. 1.

제2호)에는 피의자가 독일 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체류가 예상되지도 않고(제153f조 제2항 1문 제3호) 국제 재판소, 범행지 국가,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그 사건을 소추하는 경우(제153f조 제2항 1문 제4호)에 독일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한 소추를 면제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피의자가 독일 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그 고소인이 독일인이 아니고, 국제 재판소에 그 피의자를 인계하거나 그 피의자를 소추할 범행지 국가, 행위자 국적국 또는 피해자 국적국에 인도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그 인계 또는 인도를 의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일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한 소추를 면제할 수 있다(제153f조 제2항 2문).

이상에서 언급한 국제범죄에 대한 독일 검찰의 소추의무 내지 소추재량의 체계를 개관해 보면, 국제형법전 제6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가 독일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즉 행위자나 피해자가 독일인이거나 행위가 독일 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강제주의가 관철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53f조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소추면제의 재량을 인정하여 외국의 형사소추기관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소추를 우선시키고 있다.

2.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 실무의 문제점

국제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는 독일 법원조직법 제 142a조에 따라서 연방검찰(Generalbundesanwalt)이 관할한다. 국제범죄에 대한 독일 연방검찰의 소추의무 내지 소추재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독일 형사사법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례, 즉 외국에서 범해진 국제범죄가 독일과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독일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국제형법전 위반사건들은 거의 모두 지금까지 독일 수사 실무에서 소추가 면제되는(구체적으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는 우즈베키스탄 전 내무부장관 Zokirjon Almatov 사건을 들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국제인권감시비정부기구(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 Andijan에서 대규모 학살과 우즈베키스탄 감옥 내에서의 구금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고문을 자행했다는 사실로 2005년 12월 5일 Almatov를 독일 연방검찰에 고발하였다. Almatov는 고발되기 전에 치료차 독일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연방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에 Dubai로 도주해 버렸다. 이 사건 대하여 독일 연방검찰은 Almatov가 독일 내 체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153f조 제1항 1문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는 소추면제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검찰의 소추면제 처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연방검찰이 즉시 대응 했더라면 독일 내에서 Almatov의 신병을 확보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²⁶⁾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일에서는 국제형법 제1조의 순수한 세계주의 내지 절대적 또는 순수한 세계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53f조를 신실함으로써 국제형법전이 발효된 이후 제기되었던 수십 건의 국제형법전 위반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 수사절차가 개시된 사건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소추실무를 고려해보면, 독일 입법자는 국제형법전을 통하여 국제범죄의 처벌과 억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목표보다는 독일의 국가주권에 더 많은 무게를 부여했다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

3. 독일에서 세계주의 관철을 위한 노력

국제범죄에 독일인이 행위자 또는 피해자로 등장하거나 범행지가 독일인 경우에는 독일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범죄가 독일과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형법전 제1조의 세계주의를 원용하여 독일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범죄가 독일 밖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를 외국에서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수사행위를 외국에서 허용하

26) Almatov 사건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쟁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Ausschuss für Menschenrechte und humanitäre Hilfe(Deutscher Bundestag), Wortprotokoll, 44. Sitzung(Protokoll Nr. 16/44), 2007. 10. 24 1-42쪽 참조 (<http://www.bundestag.de/ausschuesse/a17/anhoerungen/voelkerstrafgerichtshof/prot.pdf>).

는 지도 의문이지만 수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 나아가 독일 연방검찰이 외국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나 제3국의 사법공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사법공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고발된 사건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장관이나 군 고위장성 등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상의 갈등마저 불러올 수 있다.²⁷⁾ 독일의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제153f조를 신설하여 소추를 면제할 예외규정을 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⁸⁾ 문제는 독일 연방검찰이 형사소송법 제153f조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나머지 국제형법전이 그 실제적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다.²⁹⁾

앞에서 언급한 Almatov 사례는 독일 형사법학계와 실무에서 국제형법상 세계주의의 관철을 둘러싼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Almatov가 독일에 치료차 입국했을 당시에는 독일정부는 Almatov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입국비자를 발급해 준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 연방검찰이 Almatov를 소추할 의지만 있었다면 첩보기관이나 국경경찰 등 각종 정보경로를 통하여 Almatov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독일에서는 국제형법전의 보다 강력한 적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정보 교류, 연방검찰의 인적·물적 기반의 구축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입법적인 차원의 노력으로는 연방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제153f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재량적 판단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3f조는 국제형법전을 실천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 없이 오로지 연방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만 의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내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제형법전 위반사건 - 대부분의 사건이

27) Claus Kreß, Vom Nutzen eines deutschen Völkerstrafgesetzbuches, Nomos-Baden-Baden, 2000, 2쪽.

28)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 형사소송법 제153f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독일 수사기관의 부담가중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BT-Drs. 14/8524, S. 37.

29) Daniel Joachim Klocke, Das deutsche Völkerstrafgesetzbuch - Chance oder Farce? (http://www.uni-duesseldorf.de/HHU/DIAS/Dokumente/direktorien/pi_law/030921_07.pdf), 2003, 3쪽.

이에 해당한다 - 에서 연방검찰로 하여금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어 결국 국제범죄의 실효적 소추를 저해할 위험을 낳게 한다. 이 점에서 현재 독일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국제형법전에 규정된 핵심적 국제범죄의 행위자나 피해자가 독일인이 아니고 행위지도 독일이 아닌 사건에서 연방검찰의 적절한 소추재량을 인정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방검찰에 대한 통제장치의 일환으로 연방검찰총장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공판절차의 개시를 관할하는 법원의 동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 제153f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IV. 독일 국제형법전의 소추체계의 정책적 시사점

독일 국제형법전 제1조의 순수한 세계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국제범죄가 대한민국과 국내적 관련성(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체류)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조건부 세계주의 또는 광의의 세계주의라 한다.³⁰⁾ 이와 같은 조건부 세계주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인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쟁범죄,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 핵심범죄는 단순한 조약상의 국제범죄(treaty crimes)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집단살해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은 이미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서 ‘대한민국영역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핵심적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공동대응이라는 관습법적 의무를 오히려 이행하지 않는 입법방식이다. 예컨대 단순한 조약상의 국제범죄에 대하여 순수한 세계주의를 취하게 되면 유엔헌장 제2조 제6호의 불개입원칙과 제2조 제4호의 국가의 영토적 고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30) Kai Ambos, Internationales Strafrecht, C.H.Beck-München, 2006, 53쪽.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핵심적 국제범죄에 대한 소추는 불개입원칙이나 영토적 고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적 국제범죄의 행위자가 처벌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개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표를 실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체형법의 영역에서는 현재와 같은 조건부 세계주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독일 국제형법전 제1조와 같이 순수한 세계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을 순수한 세계주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추의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즉, 국가간의 정치적, 외교적 갈등과 현실적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당해 국제범죄의 행위자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고발이 있는 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개입근거를 순수한 세계주의로 변경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가적인 요건인 “대한민국영역 안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되, 그 대신에 이 부가적인 요건과 그 밖에 수사현실과 국제공동체 내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순수한 세계주의의 관철이 제한될 수 밖에 요건들(예외론적 관점)을 새로운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다만 절차법적으로 소추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독일의 실무를 참고하여 수사기관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V. 마치며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발현형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제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가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사기관에 국제범죄 위반사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국제범죄가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특히 국제범죄의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는 행위자들이 고위정치인이나 군장성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수사기관이 쉽게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적지 않은 난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로마규정 이행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범죄를 소추하는 데 주저하고 있고, 이는 로마규정 이행법률의 실효성의 저하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입법자는 국제형법전에서 독일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국제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형법전을 적용할 수 있는 순수한 세계주의를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53f조를 통하여 다시금 이러한 사례에 대한 소추면제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결국에는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되는 국제범죄가 독일과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된다. 따라서 비록 독일 국제형법전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두고 국제형법전이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국제형법전이 표방하고 있는 순수한 세계주의의 관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의 소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구축 이외에 형사소송법 제153f조의 운용에 대한 새로운 성찰(예컨대 형사소송법 제153f조의 개정)이 필요한 것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국제형법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5항에서 순수한 세계주의를 제한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나 국가간의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은 국제범죄의 수사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영역(예컨대 수사의 어려움, 국가간의 정치적·외교적 마찰)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상징적 형법으로 전락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범죄에 대한 순수한 의미의 세계주의를 규정하되,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수사강제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진국, 국제형법의 법원(Rechtsquelle)과 해석방법론에 관한 소고, 입법정책 제1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12.
- Ambos, Kai : Internationales Strafrecht, C.H.Beck-München, 2006.
- Ambos, Kai : Völkerrechtliche Kernverbrechen, Weltrechtsprinzip und §153f StPO – zugleich Anmerkung zu GBA, JZ 2005, 311 und OLG Stuttgart, NStZ 2006, 117, NStZ 2006.
- Ambos, Kai : Der Allgemeiner Teil des Völkerstrafrechts, Ansätze einer Dogmatisierung, 2. Aufl., Duncker&Humblodt-Berlin, 2004.
- Ausschuss für Menschenrechte und humanitäre Hilfe(Deutscher Bundestag), Wortprotokoll, 44. Sitzung(Protokoll Nr. 16/44), 2007. 10. 24
- Blanke, Hermann-Josef/Molitor, Claus : Der internationale Strafgerichtshof, AdV 2001.
- Bremer, Kathrin : Nationale Strafverfolgung internationaler Verbrechen gegen das humanitäre Völkerrecht, Peter Lang-FfM u.a., 1999.
- Ausschuss für Menschenrechte und humanitäre Hilfe(Deutscher Bundestag), Wortprotokoll, 44. Sitzung(Protokoll Nr. 16/44), 2007. 10. 24.
- Hannich, Rolf : Justice in the Name of All. Die praktische Anwend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s aus der Sicht des Generalbundesanwalts beim Bundesgerichtshof, ZIS 13/2007.
- Hartstein, Regine: Das deutsche Völkerstrafgesetzbuch, in: Hans-Heiner Kühne u.a., (Hrsg.), Völkerstrafgesetzbuch, Julius Jonscher Verlag-Osnabrück, 2007.
- Joecks, Wolfgang : Strafprozessordnung, C.H.Beck-München, 2006.
- Klocke, Daniel Joachim : Das deutsche Völkerstrafgesetzbuch – Chance oder Farce?, 2003.
- Kreß, Claus : Vom Nutzen eines deutschen Völkerstrafgesetzbuches, Nomos-Baden-Baden, 2000.
- Satzger, Helmut : Das neue Völkerstrafgesetzbuch – Eine kritische Würdigung, NStZ

2002.

Weigend, Thomas : Bemerkungen zur Vorgesetztenverantwortlichkeit im Völkerstrafrecht, ZStW 116, 2004.

Werle, Gerhard : Konturen eines deutschen Völkerstrafrechts, JZ, 2001.

Werle, Gerhard : Völkerstrafrecht, Mohr Siebeck·Tübingen, 2003.

Die Wirksamkeit des deutschen Völkerstrafgesetzbuches und dessen rechtspolitische Hinweise

Jinkuk Lee*

Das deutsche Völkerstrafgesetzbuch ist am 30. Juni 2002 – einem Tag vor dem Römischen Statut – in Kraft getreten und soll durch die Eingrenzung des Rückzugsraumes für Täter schwerster Menschenrechtsverbrechen dazu beitragen, solche Verbrechen weltweit ahnden zu können. In den Jahren seit seiner Verabschiedung muss jedoch festgestellt werden, dass die Anwend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durch den Generalbundesanwalt hinter den Strafverfolgungsbemühungen anderer Staaten zurückbleibt. Insoweit soll eine Massnahme getroffen werden, um die Umsetz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zu verstärken. Das Weltrechtsprinzip im deutschen Völkerstrafgesetzbuch kann beim koreanischen Umsetzungsgesetz ein Vorbild geben, das auf einem bedingten Weltrechtsprinzip beruht. Das geltende bedingte Weltrechtsprinzip soll in Zukunft zum reinen Weltrechtsprinzip verändert werden.

❖ Key Words :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crime, german international criminal law, universal jurisdiction

투고일 : 2008. 8. 4 / 심사(수정)일 : 2008. 8. 20 / 게재확정일 : 2008. 9. 5

* Professor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Ajou/Suwon, Südkorea, Dr. iur.(LL.M./Halle)